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김평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경우,
김인호, 김재형, 김제리,
김종무, 김태수, 김희걸,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양민규, 이영실,
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
장상기, 장인홍, 전병주,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
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‘애완동물’ 용어는 「동물보호법」 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을 ‘반려동물’로 정의하고 있음에도, 여전히 ‘애완동물’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.
- 또한, ‘반려동물’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‘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’에서 ‘애완동물’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, 현재 미국·유럽·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.
- 이에 1,000만 명을 넘어선 반려인구의 증가와 국민정서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중 ‘애완동물’ 용어를 ‘반려동물’로 개정함.
(안 제7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애완동물”을 “반려동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애완동물</u>을 동반한 사람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7조(관람의 제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반려동물</u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